

February 24, 2014

중국 기업결합신고 간이심사절차 시행

중국 상무부는 2014년 2월 11일 경영자집중(한국의 기업결합에 해당합니다) 간이심사 절차의 적용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자집중 간이사건 적용 기준에 관한 임시 규정(关于经营者集中简易案件适用标准的暂行规定)>(이하 “간이심사적용기준”)을 공표하였고, 간이심사적용기준은 2014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영자집중신고제도는 다른 나라의 기업결합 신고제도와 비교할 때 심사기간 자체가 장기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심사절차가 완료되는데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적은 경영자집중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간이심사적용기준의 제정 및 시행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중국 내에서도 조만간 간이심사제도가 구체적으로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는 간이심사적용기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심사절차 적용 기준

간이심사적용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영자집중에 대해서는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 관련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5%에 미달할 경우
- ② 수직적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각각의 수직적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25%에 미달하는 경우
- ③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동일 관련시장에 속해 있지도 않고, 수직적 경영자집중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집중행위와 관련된 각각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각각 25%에 미달하는 경우
- ④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중국 이외의 지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합자회사가 중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⑤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외국기업의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하고, 동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 ⑥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자회사가 경영자집중을 통하여 그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주체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2. 간이심사절차 적용 기준의 예외

간이심사적용기준에 따르면 위 1항에서 설명한 간이심사절차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① 두 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자회사가 경영자집중을 통하여 그 중 하나의 주체에 의한 지배되고, 해당 주체가 합자회사와 동일 관련시장에서 경쟁자 관계에 있을 경우
- ② 경영자집중과 관련된 관련시장의 확정이 어려운 경우
- ③ 경영자집중이 시장 진입, 기술 진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④ 경영자집중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⑤ 경영자집중이 국가경제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⑥ 상무부가 시장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3. 간이심사절차 적용의 철회

간이심사적용기준에 따르면 상무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 간이심사 절차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영자집중 신고자가 중대한 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당해 경영자집중이 경쟁제한성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공할 경우
- ③ 상무부가 경영자집중 행위의 정황 또는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4. 간이심사적용기준이 곧바로 실무상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간이심사적용기준은 간이심사절차의 적용 기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간이심사적용기준에는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는 경영자집중의 유형 및 판정 기준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간이심사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관련된 사항(가령 간이심사의 신청, 수리 및 심사 절차, 제출 서류, 심사 기한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심사적용기준의 시행일 이후부터 곧바로 간이심사절차가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간이심사절차가 실무적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세부 규정 및 실무 지침이 추가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중국 상무부가 간이심사적용기준을 실무적으로 어떠한 범위까지 활용할 것인지 여부 및 간이심사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내지 실무지침의 입법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 최용원 변호사 [북경사무소] | TEL. +86 10 8447 5343 | E-Mail. ywchoi@shinkim.com |
| ● 원중재 변호사 [상해사무소] | TEL. +86 21 6235 0411 | E-Mail. jjwon@shinkim.com |
| ● 정천주 중국변호사 [서울사무소] | TEL. +82 2 316 4201 | E-Mail. tszheng@shinkim.com |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